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 세부 안내서 -

2020.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목 적

산단 입주 기업의 청정생산공정 보급·확산을 위한 「2021년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관리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용어의 정의

- 가. 운영·수행기관이란 지원 사업의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진단팀 구성 및 운영, 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사업실적 관리·보고·정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함
- 나. 진단팀이란 사업장의 운영, 공정진단을 통해 오염을 원천 저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하고, 오염물질 감축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 컨설팅 집단
- 다. 지원사업자란 사업 신청, 진단 협조, 공정개선안 선택 및 자부담 납부, 정산 등의 의무를 갖고, 사업장의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을 통해 클린팩토리로의 전환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
- 라. 공급기업이란 지원사업자의 생산공정 내 원천적인 오염감축을 가능하게 하는 청정생산 설비/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업
- 마.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바.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

사.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인 “국고보조금”과 지원사업자가 자부담하는 비용인 “자기부담금”으로 구성

3

적용 범위

- 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세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본 세부관리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일부 생략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 공고를 통해 명시함.
- 나. 사업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 모든 산단으로 하나, 「스마트 그린산단 실행 전략」(’20.9)에 따라 스마트 그린산단을 중점 지원함
- 다. 지원사업자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코드 C의 제조업(10~34)으로 제한한다.
- 라. 시행기관의 장은 환경부·중기부 협업의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을 위한 경우 위의 “다” 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자의 조건을 제한하지 않고 클린팩토리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 오염물질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진단 지원
 -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특성 등 진단을 통해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예상 감축효과가 높은 사업장 발굴
 -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과 생산공정 진단을 통해 청정생산 도입을 위한 개선안 제공과 최적의 클린팩토리 유형*안 도출

* 친환경 생산공정, 친환경 현장재활용,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원료대체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공정개선·설비보급 지원
 - 진단결과 단기간 효과성이 높은 개선안을 우선 국비 지원하고, 기타 개선안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유도
 - 친환경 공정개선(설비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위주로 지원하되, 친환경 현장재활용, 친환경 제품생산, 친환경 연료대체 지원 병행

<유형별 지원내용>

친환경 공정개선	친환경 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청정생산 확대를 위한 친환경 생산공정전환 지원
친환경 현장재활용	폐열 회수 및 재이용, 유기용제, 용수 회수 및 재사용 등 사업장 내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친환경 제품생산	유니소재 제품 개발, 재활용 용이 제품생산 등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개발, 시험생산 지원
친환경 원료대체	유해성물질 대체, 재생가능원료 사용 등 친환경 원료 투입, 부산물 발생 저감형 원료로 교체 등 지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모든 산단 내 중소/중견 제조업(300개)*
 - * 단, 스마트 그린산단 (창원국가, 반월·시화국가, 남동국가, 구미국가, 성서일반, 광주첨단국가, 여수국가) 입주기업*을 50% 이상 중점 지원
- (지원 내용) 사업장 진단*과 맞춤형 설비보급·공정개선** 지원
 - * (사업장 진단) 환경관리 취약점 분석(운영진단)과 공정진단을 통해 개선(안) 도출
 - ** (맞춤형 지원) 단기간 효과성 높은 개선안 국비 우선지원, 기타 개선(안) 기업 자체투자 유도
 - 중소/중견기업 중 중소기업의 지원 비율을 90% 이상으로 하고, 특정 산단 지원 비율을 40% 이내로 한다. (단,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비율 일부 조정 가능)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 규모)
 - (사업장 진단) 진단팀의 사업장 진단, 중간점검 및 최종 성과취합 등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사업자의 자부담 없이 전액 국비 지원*
 - * 선정기업은 자부담 없이 운영·수행기관에서 배정한 진단팀에 대한 현장실사, 정보요청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 (맞춤형 지원) 사업장의 공정개선, 설비교체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지원 효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 맞춤형 지원은 공정개선/설비교체 비용과 설치/공사비 등에 한함(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 및 토지 구입비 등은 제외)

○ (지원 조건)

- (지원금액) 사업장 진단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맞춤형 지원은 사업장 별 평균 60백만원을 원칙으로 하고, 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최대 1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 (국고보조율) 지원 유형, 예산, 기업 규모 별 차등하여 지원

< 공정개선·설비보급 등 맞춤형 지원 국고보조율 지원조건 >

유형		국고보조금	국고 보조율	비고
신규 지원	일반형	30백만원 이하	75% 정률	총 사업비 40백만원 이하
		30백만원 초과 120백만원 이하	75% 이하	사업비 총액/민간부담 비율/평가 결과/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배분
	대표 사업장	300백만원 이하	75% 이하	국고 보조금 최대 300백만원으로 3개 이하 지원 예정
계속 지원		(120백만원-기지원금액) 이하	75% 이하	기존 수행사업장의 경우 신규 설비교체/공정개선을 한도내 재지원

- ※ 기 지원사업자도 계속지원 유형으로 지원 가능, 단 '21년 사업장 최대 예산(120백만원) 내 '기 지원된 국고보조금('20년)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지원 가능
- ※ 단, 중견기업은 모든 유형에 대하여 국고보조율 50% 이하 적용
- ※ 단, 공기압축기와 관련된 사업예산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는 33% 이하의 보조율 적용
- ※ 대표사업장은 2. 사업내용의 4개 유형(①친환경 공정개선, ②친환경 현장 재활용, ③친환경 제품생산, ④친환경 원료 대체) 중 3개 이상을 동시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을 연간 300톤 이상 개선이 가능한 사업장을 별도 평가로 선정
- ※ 지원사업자는 총사업비에 따른 회계정산 수수료를 사업계획서 상 자기부담금에 예산편성 하고, 정산수수료를 전담회계법인에 납부하여 회계정산을 받아야 함.

※ 유형자산취득비, 설치비, 공사비 등 설비도입 관련 비용만 있는 경우

총사업비 구간	회계정산 수수료
4천만원 미만	200,000원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0.5%
2억원 이상	1,000,000원

※ 설비도입 관련 비용 외 기타비용도 있는 경우

총사업비 구간	회계정산 수수료
1억원 미만	총사업비의 1%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185,000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15,000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845,000원

※ 공급기업, 회계법인 등에 지출하는 VAT는 전부 지원사업자가 자기부담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성과를 보고하고, 운영·수행기관은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6

추진 체계**< 사업 추진 체계와 사업 구성 및 역할 >**

구 분	구성 및 역할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총괄 : 정책수립, 사업계획, 사업공고 등
운영·수행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사업 기획, 선정 및 관리 총괄 ○ 지원사업자 공모, 신청서 검토 및 선정 ○ 진단팀 구성·운영 및 관리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및 지원사업자 관리 ○ 사업 실적 관리·보고·정산 등
지원사업자 (중소·중견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신청, 진단 협조, 공정개선안 선택, 자부담 납부, 사용 사업비 정산 등 ○ 사업장 공정개선 및 설비도입을 위한 공급기업 선정 및 클린팩토리로의 전환

7

추진 일정

절 차	추진 내용	일 정
① 모집 공고	○ 지원사업자 모집 공고	2.8~3.12
② 사업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 신청	2.8~3.12
③ 신청서류 검토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사항 검토	3.15~3.16
④ 서면평가	○ 오염물질 감축잠재량, 개선계획 등 지원 적합성 평가	3.17~3.19
⑤ 현장진단	○ 현장진단을 통해 사업장 운영 및 공정 진단을 통한 개선(안) 도출(진단팀 사업장 1~2회 방문)	3.22~4.30
⑥ 사업계획서 제출	○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5.3~5.4
⑦ 최종평가	○ 사업자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현장진단, 사업계획서를 최종평가	5.6~5.7
⑧ 선정 및 협약	○ 지원사업자 통보 및 협약 체결	5.10~5.14
⑨ 사업추진	○ 공정 개선 및 설비 교체 등 맞춤형 지원	5.17~11.30
⑩ 중간 점검	○ 맞춤형 지원 진행사항 현장 확인	6.1~9.30
⑪ 성과 확인	○ 클린팩토리 개선 효과 확인	12.1~12.15
⑫ 최종 보고	○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업 완료	12.15~12.31
⑬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 사업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종료 후 5년 간

* 사업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① 모집공고

- 운영·수행기관은 사업 개요,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 공고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을 국가청정 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② 사업신청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의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의 “사업계획요약서”와 기타 필수/선택 별첨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을 신청한다.
 - 사업신청은 신청마감일 18:00까지 ‘제출’된 신청 건 만 유효하다.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한다.
- ※ 본 지원 사업 신청자는 e나라도움 회원가입 필수(공인인증서 필요)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서 작성 절차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 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신청서류 검토

- 운영·수행기관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증빙자료 등이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제출자료 등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보완, 추가 서류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상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기한 내에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④ 서면평가

- 운영·수행기관은 서면평가를 통해서 지원 적합성이 우수한 1.2 ~ 1.5배수의 기업을 선별한다.
- 서면평가의 평가기준 및 가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대표사업장 지원기업 중 서면평가에 탈락한 기업이 원하는 경우 일반형으로 전환하여 추가 서면평가를 받을 수 있다.

⑤ 현장진단

- 운영·수행기관은 1차 서면평가에서 선별된 기업을 대상으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현장진단을 실시한다.
- 현장진단 평가기준 및 가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진단팀은 현장진단을 통해 지원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평가하고, 생산공정 진단을 통해 청정생산 기술/설비 도입 개선안을 발굴하여 “공정진단 보고서(별도 서식)”를 작성한 후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한다.

⑥ 사업계획서 제출

- 운영·수행기관은 진단팀의 공정진단 보고서를 지원사업자에 공유하고, 지원사업자는 공정진단 보고서를 참고하여 <별지 제3호>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한다.
- * 사업자선정위원회 평가 3일 전까지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⑦ 최종평가

- 운영·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 평가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사업에 대한 평가, 선정 대상의 세부 사업비 등을 평가한다.
- 지원사업자의 자기부담액은 현금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술/설비 도입에 따른 조업 정지 등에 의해 발생하는 인건비 항목을 자기부담금의 현물지출로 계상할 수 있으며, 사업자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승인한다
- 사업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과거 동 사업의 지원실적이 없는 참여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우선순위에 따른 지원사업자 선정 후 잔여예산에 대해 70점 이상의 과거 동 사업의 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과, 60점 이상의 신청기업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점수	지원 여부	비고
70점 이상	평가순위 중 상위 순으로 지원	과거 동 사업의 지원실적이 없는 기업
60점 이상 70점 미만	잔여예산 지원 가능	-
60점 미만	지원 불가	-

* 지원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제1호~제4호> 참조

8 선정 및 협약

- 운영·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및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사업자를 선정한다.
- 선정 시 운영·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자에게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의 수정·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사업비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사업비 및 정부지원금 조정 가능하다.
 - * 사업계획서 내 정부지원금 집행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209호)'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에 따른 보조세목별로 작성
- 운영·수행기관은 선정된 지원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의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발급하며, 지원사업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별지 제5호>의 “협약서” 서식에 따라 운영·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9 사업추진

- 지원사업자는 협약체결일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국고보조금 선급금을 신청하며, 이때 <별지 제6호>의 “착수신고서”를 운영·수행기관에 같이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공정개선·설비교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운영·수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관한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사업자는 운영·수행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함
- 운영·수행기관은 상시/중간점검 등의 결과에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업의 “중단”여부를 평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지원사업자는 “중단”의 경우에만 한하여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운영·수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10 중간 점검

- 지원사업자는 5~9월 중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진단팀에게 사업이행에 관한 중간점검을 받아야하고, 진단팀은 <별지 제7호>의 “중간점검 이행 확인서”를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한다.

11 성과 확인

-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진단팀은 지원사업자의 맞춤형 지원에 따른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성과확인 보고서(별도 서식)”를 작성하여 운영·수행기관에 제출

12 최종 보고

- 지원사업자와 진단팀은 맞춤형 지원 완료 후 실데이터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감축 개선효과가 반영된 <별지 제8호>의 “최종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필요시 운영·수행기관은 오프라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동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형자산의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이후 중요재산(취득가액 50만원 이상) 처분제한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음

13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수행 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 지원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기간 내에 연차별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등에는 운영·수행기관은 사안에 따라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9

지원사업 관리 및 보조금 지급

□ 정부지원금(선금금) 지급

- 운영·수행기관은 착수신고서 접수 후 정부지원금의 70% 이내에서 지원사업자에게 선금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지원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별지 제7호>의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e나라도움 교부신청서 작성 절차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교부관리 → ⑤ 교부신청 → ⑥ 해당 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금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운영수행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보조금 이행(선금금) 보증 보험증권과 설비 공급기업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선금금)보증 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선금금)을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의 공급기업에게 지급해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기 제출된 사업계획서 일정에 따라 공정개선·설비교체 등 맞춤형 지원, 중간점검, 최종 점검 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정부지원금(잔금) 지급

- 지원사업자는 맞춤형 지원 완료 후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신청 시,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에 대한 교부신청서 제출 시, 공급기업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명시 필요
- *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 이상) 및 보증기간은 3년
-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입금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기부담금을 맞춤형 지원의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설비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함.
- 운영·수행기관은 중간점검, 최종 점검 등 정부지원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적정한 경우,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급

□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 (교부결정 취소)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추가 자료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지원사업자는 향후 3년간 해당 보조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 (교부신청 취소) 지원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기 곤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사업수행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취소, 변경 통지)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운영·수행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

□ 계획 변경 등의 승인

- (변경 신청) 아래의 경우엔 사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

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 대표자, 설비내역, 설치소재지 등 주요 내용 변경
-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를 중지 또는 폐지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 보조비목간 전용, 보조비목 예산의 30%를 초과하는 보조세목간 전용
- (변경 승인) 변경신청서를 승인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

- 지원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로서 자기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하고, 사업비는 동 통장이나 계정에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보조금 관리

- 운영·수행기관은 사업 추진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사업비 환수 또는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운영·수행기관은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검토하고, 세부과제 추진 현황에 대하여 현장 확인·검토 후 보조금 지급

- 현장 확인 등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변경승인과 다른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 결과 보고 및 최종 평가

- 지원사업자는 협약서에 명기한 사업기간 종료 전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출
- 운영·수행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사업의 경우 <별표 2>에 따라 제재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비 정산

-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잔금) 지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별지 제12호>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운영·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 정산보고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90호)'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
 - ** 지원사업자는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전문 회계기관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사업비 정산결과를 검증받아야 함.
- 지원사업자는 운영·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잔액 등에 대한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잔액과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분리하여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 운영·수행기관은 보조금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를 전문 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수행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함.
- 지원사업자는 보조금 정산 환수금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

□ 설치설비의 관리

- 사업 완료 후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주의를 가지고 관리해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취득설비 등에 대해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취득재산 관리 대장 작성 및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명판을 부착하여 관리해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해야 함.

※ e나라도움 중요재산 현황 작성 절차

- ① e나라도움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중요재산관리 → ④ 대장관리 → ⑤ 중요재산등록

□ 설치설비 처분의 제한

- 지원사업자는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함.
- 운영·수행기관은 승인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사업자로 통보
- 운영·수행기관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5년 이내에 설비를 양도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사후관리 및 사업성과의 활용

-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연도 후 5년간 성과활용보고서를 운영·수행기관에 매년 11월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수행기관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수행

[별표 1] 사업평가 기준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평가 기준 : 서면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 타당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원 동기 • 클린팩토리 사업과의 부합성 •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애로사항, 시급성 등 	10
신청기업의 개선 가능성 (30)	• 에너지 사용량, 비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가능성이 높은 기업	15
	• 폐기물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	5
	• 대기오염물질 감축 가능성이 높은 기업	5
	• 화학물질 감축 가능성이 높은 기업	5
사업 계획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방향 및 사전준비 사항 - 진단팀의 결과에 대한 사업장의 개선 의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의 세부 내용 -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공정의 중요도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 개선 방안의 예상금액의 적절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 오염물질 개선 효과 - 개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 - 비용대비 효과 	19
제출 서류의 충실도 (16)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정보 기입 여부	10
	• 폐기물 배출 관련 정보 기입 여부	2
	•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정보 기입 여부	2
	• 화학물질 사용 및 배출 관련 정보 기입 여부	2
합 계		100
가점 항목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기술 전문기업 지정 업체	3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특화선도기업	5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전문기업	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3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	3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기업	3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기업	3
	•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3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3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평가 기준 : 현장실사 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 점
사업 타당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원 동기 • 클린팩토리 사업과의 부합성 • 사업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애로사항, 시급성 등 	10
경영층의 추진 의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기업 경영층의 사업 추진 의지 • 민간부담금 조달 방안 마련 정도 • 향후 민간 투자 의지 	10
추진 내용의 적절성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의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하고자 하는 대상공정의 중요도 - 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 방안의 타당성 - 개선 방안의 예상금액의 적절성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 내용의 클린팩토리 사업과의 연관성 	10
개선효과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염물질 개선 효과 - 개선을 통한 경제적 효과 - 비용대비 효과 	20

	• 개선 효과의 산출 근거의 타당성	10
일정 및 비용 (15)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절성 - 세부 추진일정에 대한 적절한 계획 수립 여부	5
	•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의 적정 여부 - 구성된 내역의 타당성 여부	10
사후관리 계획 (10)	• 사후관리계획의 충실도 • 유지보수 및 인력 운용 방안 마련 여부 • 향후 3년간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 적극성 보유 여부	10
합 계		100

가점항목	• 온실가스 외부사업 연계 가능 기술 적용	5
	• '21년 클린팩토리 가점 대상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지원 신청 사업장	3
	•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	5
	•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	5

[별표 2] 사업평가 시 가점 기준

분류	주요 개선활동	가점	비고
서면 평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지정을 받은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사업장	3	증빙제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또는 전문기업	5	증빙제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전문기업	3	증빙제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증빙제출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선도기업	3	증빙제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제품 품질인증 기업	3	증빙제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기업	3	증빙제출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3	증빙제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3	증빙제출
현장 실사	사업 결과가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할 수 있는 공정 개선 또는 설비교체를 신청하는 사업장	5	증빙제출
	'21년 클린팩토리 가점 대상 공정개선 및 설비보급 지원 목록[별표 3] 해당시	3	증빙제출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	5	증빙제출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사업을 통하여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클린팩토리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외부감축 등록 연계할 수 있는 사업장	5	증빙제출

[별표 3] '21년 클린팩토리 가점 대상 청정생산 기술/설비 목록

분류	주요 개선활동	적용 예시	적용 가능 업체
공정개선	냉각시스템	압출 성형기 냉각 불량으로 불량률 증가 → 냉각 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불량률 저감 및 냉각수 사용량 저감	금속가공, 플라스틱 제조업 등
	건조시스템	도금공정에서 건조 불량으로 손실 증가 → 고효율 건조기로 교체하여 생산성 개선	도금업체 등
전력저감 설비 설치	인버터	공기압축기, 염색기, 용접기 등에 인버터 신규 설치	모든 제조업
설비 교체	인덕션 히터	밴드 히터 → 인덕션 히터로 교체	플라스틱 제조업 등
전기 공급원의 전환	탄소 함유 연료 사용 설비의 친환경 원료 교체	경유, B-C → LPG	영세 제조업체
	전력으로 변환	LNG 사용으로 미세먼지(NOx)의 발생량 많음 → 전력으로 전환	금속가공, 뿌리기업 등
미활용 열 회수 및 이용	배기열 회수 활용	보일러 배기열의 회수 및 재사용	표면처리, 화학물질 제조 업체
	폐열 회수기 설치	공정 폐열 회수 및 재사용	염색 업체 등
배기시설	배기덕트 설치	고온 작업장에서 배기 덕트 설치하여 전력 효율화 및 불량률 개선	고온 장비 사용 업체 등
폐기물 저감	공정부산물 재이용 설비 설치	공정부산물 폐기 → 공정부산물 재이용	뿌리 기업 등
	재생유 설비 설치	교체 윤활유 폐기 → 재사용	금속 가공 등
화학물질 저감	누액 센서 및 경보시스템 설치	화학물질 누액으로 인체 위해성 및 자원 손실 증가 → 누액 센서 및 경보 시스템 설치로 원료 저감	도금 업체 등
친환경 원료 전환	재생 원료 사용	천연원료 → 재활용 원료로 전환	뿌리 기업 등

[별표 4]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기준

1. 조치대상자

- 자금사용 위반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자

2. 제재 조치 대상

- 정부지원금 규정 위반업체가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3. 조치기준

조치기준	주요 위반사항
사업 참여 제한 2년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대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에 대한 변경 시 운영·수행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당초 사업계획과 상이한 설비시공이 이루어졌을 경우 등 ○ 지원 대상사업 등에 관하여 부정, 태만, 그 외 부적당한 행위를 한 경우
사업 참여 제한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정부지원금 교부신청 서류 등이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및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대상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운영·수행기관 사전 승인 없이 양도·승계·교환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 ○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규정한 사항 및 공고 기준에 근거한 운영·수행기관의 처분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지원 설비를 당초계획대로 운용중이나, 연차별 사업 운영 결과 보고(성과활용보고서 제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업 및 협약 내용 또는 조건 변경, 정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환수 등 조치 기준은 본 지원사업 공고문 “9) 지원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에 명시된 기준을 따름

[별표 5] 사업변경관련 경미한 사항의 기준

구 분	항 목	내 용
공통	사업 기간연장	기존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연장되는 기간이 5일이내일 경우(사유서 제출)
	투입인력 변경	동급 또는 그 이상 인력 투입 시
설비	제품 사양 변경	정부보조금 변동 없이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사양인 것이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증빙될 경우

사업계획요약서

1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 일반 현황

업체명		설립일	
인력현황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기준	

주요 연혁	
-------	--

주요 생산품	시장규모(억 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4						

가점 부여 대상여부*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술 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선도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소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산업융합 선도기업
	<input type="checkbox"/>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 기업	<input type="checkbox"/> 스마트공장 사업 기수행 기업

* 가점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하여 확정된 실적만 인정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은 최근년도 기준으로 작성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사용/배출 현황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이라고 명시)

① 에너지 사용 현황

연도별	연료					외부스팀 (kcal)	전력(kwh)
	석유류			가스류			
	등유 (ℓ)	경유 (ℓ)	기타 (ℓ)	LNG (Nm ³)	LPG (kg)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2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4점) 부여

② 에너지 사용 비용

연도별	연료(백만원)	외부스팀(백만원)	전력(백만원)	합계(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1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3점) 부여

③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연도별	연료(tCO ₂)	외부스팀(tCO ₂)	전력(tCO ₂)	합계(tCO ₂)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1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3점) 부여

□ 오염물질 배출 현황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이라고 명시)

① 폐기물 배출 현황

연도별	폐기물발생량(톤)		폐기물처리 비용(백만원)	주요 발생 폐기물 종류
	자가처리	위탁처리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②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연도별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분류 기준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톤/년)				보유·운영 중인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먼지	SO ₂	NO ₂	계	
2018년	예시) 3종사업장 등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③ 화학물질 배출 현황

연도별	화학물질 취급량(톤)	화학물질 배출량(kg)	화학물질 위탁처리량(kg)	화학물질 처리비용(원/kg)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2 사업추진 내용

□ 사업지원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원 동기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노후 설비 교체 <input type="checkbox"/> 비용 절감 <input type="checkbox"/> 지역 민원 해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불량률 개선 <input type="checkbox"/> 국내 환경규제 조건 충족 <input type="checkbox"/> 작업자 안전 개선
희망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장 형태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4대 유형 종류	
	<input type="checkbox"/> 생산조건의 개선 (청정생산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세부 추진 내용
	<input type="checkbox"/> 현장 재사용 (용수, 용매 재사용, 에너지 회수 등)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원료 대체 (친환경 연료/원료, 재활용 원료 사용 등)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제품 생산 (에코디자인, 유니소재 제품 생산 등)		
사업 지원의 필요성	<i>(본 사업을 지원하게 된 대상사업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시급성 등을 간략하게 기술)</i>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추진 방향 및 사전 준비사항

개선 추진 방향 (□/■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장에서 요청한 내용만 개선 (0점)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장 요청 내용 우선하고 진단팀 권고 내용 반영 (5점) <input type="checkbox"/> 진단팀 권고 내용 중심으로 개선 (10점)
사전 준비사항 (□/■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환경 관련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 존재 <input type="checkbox"/> 관련 공정 및 설비개선을 위하여 공급기업 또는 엔지니어링 업체 등과의 상담한 경험 존재 <input type="checkbox"/> 관련된 경험 전문
사전 준비 내용 설명	<i>(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기술)</i>

□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

대상공정명	개선 필요사항	계획하고 있는 개선 방안	예상 금액(백만원)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대상 오염물질	예상 저감 효과
저감 오염물질 및 예상 효과 (□/■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tCO ₂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예시: 매립 분진 1톤 저감 등)
	<input type="checkbox"/>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예시: 질소산화물 발생 50kg 저감 등)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예시: 인화성 물질 100kg 대체 등)
경제적 효과 (□/■로 표시)	생산성 개선	예상 경제적 효과
	<input type="checkbox"/> 불량률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외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신제품 생산 매출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기타(항목명 추가)	천원/년	
기타 기대효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기타 기대효과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술)	

4 별첨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신청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제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신청기업 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서* 1부.

*발급 관련 문의: 1661-6844(팩토리온 민원콜센터)

- 선택 제출 서류 (해당시)

뿌리기업, 수소전문기업, 소·부·장 특화기업/전문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산업융합 선도기업 등 가점 현황 증빙 각 1부.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에너지관리대장 사본, 에너지 사용비 고지서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폐기물 처리 내용 관련 자료 사본 또는 증빙 가능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화학물질 환경배출량·이동량 조사표)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 모든 사본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

2021.

신청기업	
진단팀	

1 과제 개요

과 제 명		신청기업명	
사 업 기 간	협약일 ~ 2021년 12월 31일		

진 단 팀	성명	소속	연락처	역할

구 분	총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금액 (천원)			
비율 (%)			

대상공정명	개선 방법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희망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장 형태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4대 유형 종류	세부 내용
	<input type="checkbox"/> 생산조건의 개선 (청정생산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input type="checkbox"/> 현장 재사용 (용수, 용매 재사용, 에너지 회수 등)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원료 대체 (친환경 연료/원료, 재활용 원료 사용 등)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제품 생산 (에코디자인, 유니소재 제품 생산 등)	

오 염 물 질 저 감 효 과	온실가스 ¹⁾	폐기물 (폐수 포함) ²⁾	미세먼지 ³⁾	화학물질 ⁴⁾

경제적 효과	에너지 공정 개선 효과 ⁵⁾ (천원/년)	비용 절감 ⁶⁾ (백만원)	기타 ⁷⁾ (백만원)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은 '19년 기준으로 작성

2 사업신청서

신청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해당 사업장 정보 기재			
	대표자명		법인(개인) 등록번호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업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업종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 서에 표시된 업종 분류번호 (숫자 5자리)		
	소재 산단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 신청서에 표시된 단지명		스마트 그린산단	<input type="checkbox"/> 대상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업체	주소	(우:)				
		전화		FAX			
	지원 장소	주소	(우:)				
		전화		FAX			
	수행 책임자	성명		부서/직책	/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담당자	성명		부서/직책	/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휴대전화			
사업 현황	과제명						
	지원 희망공정						
	공정 애로사항						
	개선효과						
	협약기간	협약일 ~ 2021 년 12 월 31 일 (개월)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금 신청	(천원)	민간부담	(천원)	

3 사업추진 내용

□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

① (개선방안 1) 개선과제명

개선하고자 하는 공정, 개선 희망 설비/기술, 개선 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

② (개선방안 2) 개선과제명 (해당시)

③ (개선방안 3) 개선과제명 (해당시)

...

□ 사업 세부 추진일정(안)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11	12	1	2	3	
진단	(주요내용1)						
	⋮						
설비교체	(주요내용1)						
	⋮						
성능시험	(주요내용1)						
	⋮						
성과관리	(주요내용1)						
	⋮						

<예시, 제출 시 삭제>

구 분	사업추진내용	진도율(월)									산출물 (결과물)	
		7	8	9	10	11	12	1	2	3		
진단	냉동기 에너지 진단 (현장실사)		>	>								진단보고서
시스템 구성	설비 설계 및 견적 확인			>								
평가	최종선정 평가			>								
설비설치	냉동기 설치 및 공사				>	>						
성능시험	냉동기 시운전					>	>					
성과관리	냉동기 에너지 진단							>				
최종보고서 작성	성능평가 및 보고서 작성							>	>			최종보고서

4 사업비 사용 계획

□ 지원금 사용계획

(단위 : 천원, VAT 제외)

구 분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B)	합계(A+B)	비율(%)
공정개선				
설비교체				
원료 개선				
회계정산 수수료				
합 계				

<예시, 제출 시 삭제>

(단위 : 천원, VAT 제외)

구 분	정부지원금(A)	민간부담금(B)	합계(A+B)	비율(%)
설비교체	30,000	9,800	39,800	99.5
회계정산 수수료	0	200	200	0.5
합 계	30,000	10,000	40,000	100

□ 세부 사용계획

○ 보조비목·보조세목(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준용, e나라도움 등록)

(단위 : 천원, VAT 제외)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금액
인건비(110)	일용임금(04)	- 일용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회계검사 수수료 등	
	시설유지비(09)	- 유지 관리 비용	
	재료비(11)	- 시험생산을 위한 소모성 재료비	
	시험연구비(13)	- 성능 검사 경비	
여비(220)	국내여비(01)	-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	
건설비(420)	기본조사	-	
	설계비(01)	-	
	실시설계비(02)	-	
	시설비(03)	-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	
합 계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별첨1]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상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작성

※ 회계정산비용은 일반수용비(01)에 포함하여 작성

※ 건설비와 유형자산을 제외한 금액의 총합은 20% 이하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할 경우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예외 기준을 둘 수 있음.

<예시, 제출 시 삭제>

(단위 : 천원, VAT 제외)

보조비목	보조세목	산출내역	금액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 회계검사 수수료	200
건설비(420)	시설비(03)	- 냉동기 이송, 배관 등 설치 공사비	4,800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 고효율 냉동기 구입비	35,000
합 계			40,000

5 사후관리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기 타	

4 별첨 서류

지원 희망 설비/기술의 주요 구성 및 설계, 조감도/결선도(카달로그 등)

지원 희망 설비/기술의 구체적 예산 파악 자료(견적서 등)

신청기업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1부.

신청기업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1부.

수행책임자,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이용·활용 동의서 1부.

※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일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민간부담금 부담 협약서

1. 과 제 명 :
2. 지원기업 :
3. 협약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위의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동 사업에 부담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위 : 천원)

민간부담금 총계		
현금	금액	
현물*	금액	

*현물 출자 시 조업정지 부담비용(인건비 등) 증빙 첨부

20 년 월 일

지원기업 :

직인

사업책임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2021년 산단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확인 및 지원사업자의 인건비 계상내역 증빙자료 확인

2. 수집 항목

- 성명, 원천징수내역

3.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참여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원천징수내역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

1. 귀 기관은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어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자(지원사업장)

중소·중견기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주요내용	공 급 사	예상비용(천원)
사업 내용	○ (공정개선)		
	○ (도입대상시설)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월 일 ~ 2021년 12월 31일

○ 사업규모

(단위 : 원)

사업명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 지원비율 : % (총 사업비 중 국고보조율)

2.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 가. 정부지원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공고」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나. 정부지원금의 집행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기타 회계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 보조금법 제16조(보조금 교부신청),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등
-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보조금법 제23조, 제24조)
- ① 사정의 변경으로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③ 정부지원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사업종료연도 후 2년 이내에 양도·승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라. 허위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정부지원금을 관련 법령 및 정부지원금 교부조건 내용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
- 마.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 (통합지침 제21조)
- 바. 기타 교부조건은 운영·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부여할 수 있음. 끝.

년 월 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별지 제5호 서식] 협약서(실제 협약시 협약서 조항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협약서		
협약 당사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지원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협약 내용	사업명	
	사업비	총 사업비 (천원)
		- 정부지원금 : (천원)
		- 민간부담금 :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p>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본 문 조 항</p> <p>제1조(협약의 목적)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업무협약서(이하 협약서)'는 지원사업자가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의 사업내용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협조사항 및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 시설'이란 생기원이 지원사업자에게 통보한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서' 상 승인받은 내용(공정개선, 시설 및 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2. '지원사업자'이란 정부지원금 및 자기부담금 활용하여 지원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3. '진단팀'이란 생기원이 '지원사업자'의 클린팩토리 구축을 위하여 진단, 컨설팅 및 성과 등의 확보를 위하여 지정한 전문가 집단을 말한다. 4. '공급기업'이란 공정개선 및 설비 설치구축 등의 용역을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기업으로, 관련 전문성 및 기술력 등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생기원이 지원대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자에게 지원 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p>제3조(협약의 체결) ① 생기원, 지원사업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② 생기원은 협약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지정사업자에게 통보한다.</p> <p>③ 생기원과 지정사업자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협약서 이행을 대표하여 주관토록 한다.</p> <p>제4조(시설의 준공) ① 지원사업자는 사업 기간 내에 지원대상 시설 준공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p> <p>② 지원사업자는 동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자산은 생기원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정부지원금 활용설비 인증 명판을 부착해야 한다.</p> <p>③ 지원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5일 이내에 '중요재산 현황(취득가액 50만원 이상)'을 e나라도움(www.gosims.go.r)을 통해 작성하여야 하며, 처분제한 기간(5년) 이전까지 매년 6월과</p>		

12월에 변동현황을 생기원에 제출하고,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생기원은 지원사업자에게 협약체결을 위하여 안내한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승인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부진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정부지원금의 지급) ① 생기원은 지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착수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정부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금의 70%이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에 선급금 교부신청 시, 생기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및 공급기업이 지원사업자에게 제공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등 생기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급받는 지원사업자의 계좌는 반드시 법인명의 신설통장으로 한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기간은 사업기간 종료일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지원대상 사업 추진 시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지원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공급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생기원에서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공정개선, 설비 교체 등 계약 건으로 구별하여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공급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생기원은 지원대상 시설의 설치가 종료(시운전 포함)된 이후, 현장 확인,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 최종보고서 확인 등을 거쳐 선급금을 제외한 정부지원금의 나머지를 지원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⑥ 지원사업자는 선급금을 제외한 지원금의 나머지를 생기원으로부터 입금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을 공정개선, 설비 교체 등 계약건으로 구별하여 “공급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정부지원금은 현금으로 전문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⑦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부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가 발생한 경우
2.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기타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이 과다 계상 또는 과소 계상되는 등 협약으로 정한 정부지원금을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정부지원금의 환수) 지원대상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거나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사업계획서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협약 제9조(사후관리 및 성과평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생기원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생기원은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에게 기 지급된 정부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수행) ① 지원사업자는 정부지원금의 지급 결정 내용 및 지급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② 진단팀 또는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예정기간에 완료할 수 없다고 예상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생기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는다.(원칙적으로 정부지원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승인 이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

한 주요 제품, 사업비 예산 변경 등의 사업계획서의 내용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이 발생한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생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사업계획서가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변경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기원은 변경계획서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생기원이 진도점검, 상황보고 등을 통하여 해당 지원사업의 실적이 정부지원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교부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제6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었을 경우,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의 별도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 지원사업자는 생기원이 지원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필요범위 내에서 보고 요구 또는 현지조사 등을 실시코자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정부지원금의 사용내역 제출 및 반납) ① 지원사업자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부지원금(잔금) 지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보고서 및 정산자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부내역을 입증하여야 하며, 세부 사항은 생기원이 본 지원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기원으로부터 반납 요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생기원이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2.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
3. 정부지원금 발생이자

제9조(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①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 대상 시설을 성실한 관리자 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은 6년의 기간으로 구성되며, 사업 종료 후 5년간 사업운영결과보고서를 생기원에게 지정된 양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생기원은 5년에 걸쳐 성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③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5년간은 생기원이 추진하는 클린팩토리 성과평가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④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생기원이 추진하는 클린팩토리 설치확인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상호 공동협의하여 본 협약내용 또는 첨부 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생기원과 지원사업자는 상호간에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생기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지원사업자의 사위에 의한 행위가 사업 중 발견되었을 경우
4. 생기원 또는 정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곤란할 경우

제12조(제재조치) 생기원은 본 지원사업의 위반행위별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 해당될

중간점검 이행 확인서

1. 사업명 :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2. 지원사업장 정보
 - 사업장 : *사업장 명*
 - 소재 산단 : *산단 명*
 - 중간점검 사업장측 담당자 : *이름 직함 연락처*
3. 중간점검 정보

중간점검 일시	점검 대상설비/공정	진단팀측 점검자	특이사항
<i>2020. 11. 20. 14:00~15:00</i>	<i>공기압축기</i>	<i>○○○ (010-1234-5678)</i>	

20 . . .

지원사업장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최종보고서

2020.

기업명	
진단팀	

1 사업 성과 개요

과 제 명		기 업 명	
사 업 기 간	협약일 ~ 20 년 월 일 (개월)		

진 단 팀	성명	소속	연락처	역할

사 업 성 과	사업장 진단에 따른 개선(안)

수 개 선 내 용 행 용	개선 대상 공정 및 개선내용

2 개선 내용(상세)

사업장 전체 공정도 및 설비 배치도

--

개선이 이뤄진 공정의 세부 공정도

--

개선 전/후 사진

개선 전	개선 후

3 개선 효과

환경적 개선 효과

경제적 개선 효과

기타 개선 효과

4 향후 계획

유지·보수 계 획	
유지보수 인력운용	
사후관리 방 법	
민간 투자 계획	
기타	

별지 제9호 서식] 취득재산 등 관리 명세표

취득 재산 등 관리명세표			
시 설 명			
시설개요			
규 격 (용량 등)		취득금액	
취득일자		내용연수	
사 진			

[별지 제10호 서식]

장 비 명 (계측기명)	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사 양	CPU: I5-3470 (3.2GHz), RAM: 4G, HDD: 500G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1년 월 일	
A/S 연락처	공급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비 명 (계측기명)	에너지관리시스템 서버	
사 양	CPU: I5-3470 (3.2GHz), RAM: 4G, HDD: 500G	
관리번호		
준공년월	2021년 월 일	
A/S 연락처	공급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 본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에 의해서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잔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명 :

2. 신청자

- 주소(설치장소) :
- 지원사업자명(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3.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기간(착수 및 완료 예정일) :
- 사업내용 :

4. 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분	총 사업비	국고보조금	자기부담금
금액(부담율, %)			

5. 국고보조금 당회 교부 요청액(c) : 원

(단위 : 원)

합계	국고보조금 총액 (a)	기 교부액 (b)	당회 교부 요청액 (c)	교부잔액 (a-b-c)
				0

20

지원사업장 대표자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사업수행 포기신청서					
㉠ 기본정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생년월일	
	사무소	주 소	(우 :)		
		전 화		FAX	
	설치지	주 소	(우 :)		
		전 화		FAX	
	신청시설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 . .
신청금액					
㉡ 포기사유	선택	내 용			
	<input type="checkbox"/>	자금조달 불가			
	<input type="checkbox"/>	시설설치 지연			
	<input type="checkbox"/>	기타사유 ()			
<p>「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업수행 및 지원대상 사업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포기 신청하고, 이에 따른 제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제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감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사업장 대표자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p> <p>첨부 : 포기세부 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p>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수행포기신청서' 작성 필요

[별지 제14호 서식]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통지서

정부지원금 교부 취소(변경) 통지서								
신청자 일반사항	사업자명			대표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20	
설치(예정) 시설	설치장소			시공(예정)일			20	
	NO	시설명	모델명/제조사	용량	단위	대수	온실가스 예상 감축량(tCO ₂)	지원(예정) 금액
	1							
	2							
	3							
	4							
합 계								
취소사유								
담당자				문의전화				
<p>위와 같은 사유로 귀사에서 제출한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신청사항이 취소(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 년 월 일</p> <p>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p>								

[별지 제15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지원 기업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명		기 업 구 분		중소기업/중견기업	
	업 종		법 인 등 록 번 호			
	사무소	주 소 (우 :)				
		전 화 ☎	FAX			
	설치지	주 소 (우 :)				
		전 화 ☎	FAX			
	담당자	담 당 자 명		부서/직책		
		이메일 @	연락처		사 무 실 ☎	
					휴대전화 ☎	
사업 현황	사 업 명		총 절감량		(toe)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계약예정일 . . .	착공예정일 . . .	준공예정일 . . .			
	총 사 업 비 (천원)	지원금 신청 (천원)	민간 부담 (천원)			
변 경 사 항	선택	변 경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input type="checkbox"/>	대표자명				
	<input type="checkbox"/>	설치시설내역				
	<input type="checkbox"/>	설치소재지				
	<input type="checkbox"/>	사업 경비 비목변경				
	<input type="checkbox"/>	기타 변경사항				
<p>위와 같이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지원사업자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p>						
<p><첨 부></p> <p>1. 변경사업계획서 1부.</p> <p>2. 기타 증빙서류 등</p> <p>* 모든 사본제출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p> <p>*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에 있는 인장 모두 유효</p>						

◆ 변경사유

변경내용 상세

변경이유

변경이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

□ 계획 변경 신청 관련 변경항목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

변경항목	첨부서류	비고
대표자명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설치시설내역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도면, 팜플렛 등)	*변경신청시설 명세작성해야함
설치소재지	□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혹은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시공경비 비목변경	□ 변경 후 계약서, 내역서, 관련서류	

사 업 비 정 산 보 고 서					
1. 일반현황					
사업명					
참여기업					
총 사업기간					
2.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단위: 원)					
정부지원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비율(㉣=㉠÷㉢)		
3. 사업비 사용실적 및 정부지원금 반환액 산출					
(단위: 원)					
당해연도 집행액 (㉤)	당해연도 집행잔액 (㉦=㉢-㉤)	발생이자 (㉧)	반환대상액 (㉨=㉦+㉧)	정부지원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반환액 (㉪=㉨-㉩)
※ 자기부담금은 반납하지 않음					
첨부 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1부. 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 1부. 3. 증빙서류 1부. 끝.					
「2021년 산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사업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참여기업 대표자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귀하					

[첨부1]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xxx,xxx	xxx,xxx	xxx,xxx	△△.△%
건설비(420)	시설비(03)				
.....
합 계		x,xxx,xxx	x,xxx,xxx	x,xxx,xxx	△△.△%

[첨부2] 보조비목별 일자별 집행내역(예시)

(단위 :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집행일자	집행처	집행금액	사용목적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2021 .0 .00	□□□	1,000,000	컨설팅(선급금)
	
	소 계			x,xxx,xxx	
건설비(420))	시설비(03)	2021 .0 .00	xxx,xxx	시공비(선급금)
	
	소 계			xxx,xxx	
.....	
합 계				x,xxx,xxx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일반형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신청 사업장 :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정보 작성

- 기업구분 : 중소/중견기업 중 택일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하여(참고 1) 분류코드 5자리 기재
(복수 업종 보유 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대표 업종을 기재)
- 소재 산단 :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정확한 산단명
- 스마트산단* 입주여부 : 산업부 지정한 7개 스마트산단의 입주사업장 여부
* 창원국가산단, 반월·시화국가산단, 남동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성서일반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사업 현황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공정에 대한 정보 작성

- 클린팩토리 구축유형 : 지원받고자 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유형을 선택
- 지원 희망공정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생산공정을 기술
- 공정 애로사항 : 개선 희망 공정 내 발생하는 환경적/경제적 문제점 기술
- 개선효과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 시 기대되는 예상 개선 효과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대표사업장형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신청 사업장 :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정보 작성

- 기업구분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 택일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하여(참고 1) 분류코드 5자리 기재
(복수 업종 보유 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대표 업종을 기재)
 - 소재 산단 :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정확한 산단명
 - 스마트산단* 입주여부 : 산업부 지정한 7개 스마트산단의 입주사업장 여부
- * 창원국가산단, 반월·시화국가산단, 남동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성서일반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사업 현황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공정에 대한 정보 작성

- 클린팩토리 구축유형 : 지원받고자 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유형을 선택,
대표사업장은 3개 이상을 동시 개선해야하므로 3개 이상을 선택
- 지원 희망공정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생산공정을 선택한
클린팩토리 구축유형에 맞게 기술
- 공정 애로사항 : 개선 희망 공정 내 발생하는 환경적/경제적 문제점을
선택한 클린팩토리 구축유형에 맞게 기술
- 개선효과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 시 기대되는 예상 개선 효과를
선택한 클린팩토리 구축유형에 맞게 기술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계속지원형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신청 사업장 :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정보 작성

- 기업구분 : 중소기업 중 택일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하여(참고 1) 분류코드 5자리 기재
(복수 업종 보유 시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대표 업종을 기재)
- 소재 산단 : 산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에 표시된 정확한 산단명
- 스마트산단* 입주여부 : 산업부 지정한 7개 스마트산단의 입주사업장 여부
* 창원국가산단, 반월·시화국가산단, 남동국가산단, 구미국가산단,
성서일반산단, 광주첨단국가산단, 여수국가산단
- 기 지원 국고보조금 : 20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총액을
원단위로 입력
- 기 지원 설비/공정 : 20년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설비/공정을 상세히 작성

사업 현황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공정에 대한 정보 작성

- 클린팩토리 구축유형 : 지원받고자 하는 클린팩토리 구축유형을 선택
- 지원 희망공정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생산공정을 기술
- 공정 애로사항 : 개선 희망 공정 내 발생하는 환경적/경제적 문제점 기술
- 개선효과 : 청정생산 설비/기술 도입 시 기대되는 예상 개선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요약서(공통)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신청기업 일반 현황 :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현황 작성

- 가점 부여 대상여부 : 해당하는 경우 체크하고 증빙자료 제출
- 에너지 사용 현황, 사용 비용 : 에너지 사용 현황, 사용 비용을 정확히 기입하고 증빙자료 제출 (미기입 시 감점 있음)
-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온실가스 계산기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기입하고, 계산자료 화면 첨부하여 증빙자료 제출 (미기입 시 감점 있음)
- 오염물질 배출 현황 : 해당시 작성하고 증빙자료 제출

※ 해당하지 않는 에너지 또는 배출 오염물질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 으로 명시해야 감점 없음

사업추진 내용 :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 추진 내용 작성

- 사업지원 배경 및 필요성 : 지원동기, 희망 클린팩토리 형태를 선택하고, 세부 추진 내용 및 사업 지원 필요성 작성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추진방향 및 사전 준비사항 : 청정생산 기술/설비 도입을 위한 진단 및 개선 지원방향에 대한 사업주의 의견 및 경험 작성
-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내용 : 양식에 맞춰 작성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 사업지원에 따른 예상 개선 효과 작성

사업계획요약서

1 신청기업 현황

신청기업 일반 현황

업체명		설립일	
인력현황	직원 수 : 명	※ 상시인력 기준	

주요 연혁	
-------	--

주요 생산품	시장규모(억 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4						

가점 부여 대상여부*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뿌리기술 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선도기업
	<input type="checkbox"/> 수소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장비산업 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에너지절약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산업융합 선도기업
	<input type="checkbox"/> 재제조제품 품질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스마트에너지플랫폼구축 기업	<input type="checkbox"/> 스마트공장 사업 기수행 기업

* 가점 관련된 증빙자료 제출하여 확정된 실적만 인정

※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매출액은 최근년도 기준으로 작성

□ 에너지 및 온실가스 사용/배출 현황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이라고 명시)

① 에너지 사용 현황

연도별	연료					외부스팀 (kcal)	전력(kwh)
	석유류			가스류			
	등유 (ℓ)	경유 (ℓ)	기타 (ℓ)	LNG (Nm ³)	LPG (kg)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2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4점) 부여

② 에너지 사용 비용

연도별	연료(백만원)	외부스팀(백만원)	전력(백만원)	합계(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1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3점) 부여

③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연도별	연료(tCO ₂)	외부스팀(tCO ₂)	전력(tCO ₂)	합계(tCO ₂)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1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1점) 전부 기입(3점) 부여

□ 오염물질 배출 현황 (해당없을 시 ‘해당없음’ 이라고 명시)

① 폐기물 배출 현황

연도별	폐기물발생량(톤)		폐기물처리 비용(백만원)	주요 발생 폐기물 종류
	자가처리	위탁처리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②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연도별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업장 분류 기준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톤/년)				보유·운영 중인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먼지	SO ₂	NO ₂	계	
2018년	예시) 3종사업장 등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③ 화학물질 배출 현황

연도별	화학물질 취급량(톤)	화학물질 배출량(kg)	화학물질 위탁처리량(kg)	화학물질 처리비용(원/kg)
2018년				
2019년				
2020년				

※ 서면평가 대상으로 미기입(0점), 합계 또는 일부 기입(0.5점) 전부 기입(2점) 부여

2 사업추진 내용

□ 사업지원 배경 및 필요성

사업지원 동기 (복수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노후 설비 교체 <input type="checkbox"/> 비용 절감 <input type="checkbox"/> 지역 민원 해결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불량률 개선 <input type="checkbox"/> 국내 환경규제 조건 충족 <input type="checkbox"/> 작업자 안전 개선
희망하는 클린팩토리 사업장 형태 (□/■로 표시, 복수 선택 가능)	4대 유형 종류	
	<input type="checkbox"/> 생산조건의 개선 (청정생산설비 교체, 운전조건 개선 등)	세부 추진 내용
	<input type="checkbox"/> 현장 재사용 (용수, 용매 재사용, 에너지 회수 등)	
	<input type="checkbox"/> 친환경 원료 대체 (친환경 연료/원료, 재활용 원료 사용 등)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제품 생산 (에코디자인, 유니소재 제품 생산 등)		
사업 지원의 필요성	<i>(본 사업을 지원하게 된 대상사업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시급성 등을 간략하게 기술)</i>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추진 방향 및 사전 준비사항

개선 추진 방향 (□/■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장에서 요청한 내용만 개선 (0점) <input type="checkbox"/> 지원사업장 요청 내용 우선하고 진단팀 권고 내용 반영 (5점) <input type="checkbox"/> 진단팀 권고 내용 중심으로 개선 (10점)
사전 준비사항 (□/■로 표시)	<input type="checkbox"/> 환경 관련 컨설팅을 받아본 경험 존재 <input type="checkbox"/> 관련 공정 및 설비개선을 위하여 공급기업 또는 엔지니어링 업체 등과의 상담한 경험 존재 <input type="checkbox"/> 관련된 경험 전문
사전 준비 내용 설명	<i>(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기술)</i>

□ 사업지원을 통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

대상공정명	개선 필요사항	계획하고 있는 개선 방안	예상 금액(백만원)

□ 사업지원 내용의 개선 효과

저감 오염물질 및 예상 효과 (□/■로 표시)	대상 오염물질	예상 저감 효과
	<input type="checkbox"/> 온실가스	tCO ₂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예시: 매립 분진 1톤 저감 등)
	<input type="checkbox"/>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예시: 질소산화물 발생 50kg 저감 등)
	<input type="checkbox"/> 화학물질	(예시: 인화성 물질 100kg 대체 등)
경제적 효과 (□/■로 표시)	생산성 개선	예상 경제적 효과
	<input type="checkbox"/> 불량률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외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신제품 생산 매출 효과	천원/년
<input type="checkbox"/> 기타(항목명 추가)	천원/년	
기타 기대효과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얻을 수 있는 기타 기대효과가 있을 경우 간략하게 기술)	

4 별첨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신청기업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

신청기업 최근 2개년 재무제표(제무상태표, 손익계산서) 1부.

신청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신청기업 산업단지입주 (변경)계약신청서* 1부.

*발급 관련 문의: 1661-6844(팩토리온 민원콜센터)

- 선택 제출 서류 (해당시)

뿌리기업, 수소전문기업, 소·부·장 특화기업/전문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산업융합 선도기업 등 가점 현황 증빙 각 1부.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사본, 에너지관리대장 사본, 에너지 사용비 고지서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폐기물 처리 내용 관련 자료 사본 또는 증빙 가능 1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화관법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화학물질 환경배출량·이동량 조사표) 사본 또는 증빙 가능 자료 1부.

※ 모든 사본제출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 서류에 날인하는 인장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 및 '사용인감계'의 사용인장 모두 유효

[참고 1]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 제조업 (사업장 해당 분류코드 다섯자리 기재)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분류코드
식료품 제조업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도축업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10111
			가금류 도축업	10112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1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가금류 제외)	10122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가금류 제외)	10129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212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0213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19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220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김치류 제조업	10301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2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1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403
	낙농제품 및 식용 병과류 제조업	낙농제품 및 식용 병과류 제조업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501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병과류 제조업	10502
	곡물 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곡물 도정업	10611
			곡물 제분업	10612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3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9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620
	기타 식품 제조업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떡류 제조업	10711
			빵류 제조업	1071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13
		설탕 제조업	설탕 제조업	1072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30	

		품 제조업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장류 제조업	10743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49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10759
		기타 식료품 제조업		커피 가공업	10791
				차류 가공업	10792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3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4
				인삼식품 제조업	10795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6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7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9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배합 사료 제조업	1080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0802
		음료 제조업	알코올 음료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탁주 및 약주 제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2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19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주정 제조업			11121	
	소주 제조업			11122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9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및 얼음 제조업		얼음 제조업	11201	
			생수 생산업	112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1209	
담배 제조업	담배 제조업	담배 제조업	담배제품 제조업	120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면 방적업	13101	
			모 방적업	13102	
			화학섬유 방적업	13103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13104	
			기타 방적업	13109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직물 직조업	면직물 직조업
	모직물 직조업	13212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13213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13219			
	직물제품 제조업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221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13222
		커튼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3	
				천막, 텐트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224

			직물포대 제조업	13225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편조 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1330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13402	
			날염 가공업	13403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10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3921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13922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세폭직물 제조업	13991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3993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1399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3999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14111
				여자용 겉옷 제조업	14112
			속옷 및 잠옷 제조업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0
			한복 제조업	한복 제조업	14130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14191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 의복 제조업				14192	
가족의복 제조업				14193	
유아용 의복 제조업				14194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9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14200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14300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4411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9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모자 제조업	14491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유사 제품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10		
		핸드백, 가방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15121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9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0	
	신발 및 신발부분품 제조업	신발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15211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15219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제재 및 목재가공업	제재 및 목재가공업	일반 제재업	16101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102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16103	
	나무제품 제조업	박판, 합판 및 강화 목제품 제조업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6211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16212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6221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9	
		목재 상자, 드럼 및 적재판 제조업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6231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용기 제조업	16232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목재 도구 및 주방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91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6292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9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종이 및 판지 제조업	펄프 제조업	17110
				신문용지 제조업	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17123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7124	
위생용 원지 제조업				17125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29	
골판지, 종이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골판지 제조업	17211	
			골판지 상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	17212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7221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2	

		이 용기 제조업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3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72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1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17902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17903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인쇄업	경 인쇄업	18111		
			스크린 인쇄업	18112		
			오프셋 인쇄업	18113		
			기타 인쇄업	18119		
	기록매체 복제업	기록매체 복제업	인쇄관련 산업	제판 및 조판업	18121	
				제책업	18122	
				기타 인쇄관련 산업	18129	
				기록매체 복제업	182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19101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102		
	석유 정제품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1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9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기초 화학물질 제조업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0112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1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무기 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산업용 가스 제조업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29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1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132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제조업	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2020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제조업	20203		
	비료, 농약 및 살균·살충제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 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제조업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13
		살균·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생물 살균·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32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1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13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20421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20422
			화장품 제조업	20423
			표면 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업	20424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1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049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	204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화학섬유 제조업	화학섬유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20501	
		재생 섬유 제조업	20502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기초 의약 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1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102	
	의약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0	
		한의약품 제조업	2122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111	
		타이어 재생업	22112	
		고무 패키징류 제조업	22191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22192	

			제조업		
			고무 의류 및 기타 위생용 비경 화 고무제품 제조업	22193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차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 조업	22211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22214	
	건축용 플라스 틱제품 제조업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 품 제조업	22221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22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22223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22229	
	포장용 플라스 틱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 업	22232	
	기계장비 조립 용 플라스틱제 품 제조업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1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 틱제품 제조업	22249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 업		폴리스티렌 발포 성형제품 제조 업	22251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 조업	22259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 면처리 제품 제조업	2229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 업	22299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판유리 및 판 유리 가공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23111
				안전유리 제조업	23112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9
산업용 유리 제 조업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3121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3122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29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3191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3192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9	
내화, 비내화 요 업제품 제조업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12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3221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3222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9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1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 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 업	23232	
		기타 건축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 조업	23239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시멘트,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23311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12	
	콘크리트, 레 미콘 및 기타 시멘트, 플라 스터 제품 제 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1	
		레미콘 제조업	23322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23323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4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 트제품 제조업	23325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329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업	석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1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19	
	그 외 기타 비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 조업	23991	
		연마재 제조업	23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3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94	
		탄소섬유 제조업	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23999	
1차 금속 제조업	1차 철강 제 조업	제철업	24111	
		제강업	24112	
		합금철 제조업	24113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4119	
	철강 압연, 압 출 및 연신제 품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1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철강선 제조업	24123	
	철강관 제조업	주철관 제조업	24131	
		강관 제조업	24132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 조업	24133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제조업	24191	
			그 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4199	
	1차 비철금속 제조업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9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90		
	금속 주조업	철강 주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24311	
			강 주물 주조업	24312	
		비철금속 주조업	알루미늄 주물 주조업	24321	
			동 주물 주조업	24322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329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25111
				구조용 금속 판제품 및 공작물 제조업	25112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3
				수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25114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25119	
산업용 난방보일러, 금속 탱크 및 유사 용기 제조업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25121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25122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2512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25200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단조, 압형 및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분말 야금제품 제조업	25911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3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 가공업	금속 열처리업	25921
			도금업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5923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25924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업	25929
		날붙이, 수공구 및 일반 철물 제조업	날붙이 제조업	25931
			일반 철물 제조업	25932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25933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25934
		금속 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볼트 및 너트류 제조업	25941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25944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5991
			수동식 식품 가공 기기 및 금속 주방용기 제조업	25992
			금속 위생용품 제조업	25993
			금속 표시판 제조업	2599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25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1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26121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129
	전자 부품 제조업	표시장치 제조업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1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26212
			기타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4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전자 축전기 제조업	26291
			전자 저항기 제조업	26292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4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5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9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26310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1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2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3	
			기타 주변 기기 제조업	26329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0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1	
			이동 전화기 제조업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9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텔레비전 제조업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26521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529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의료용 기기 제조업	방사선 장치 및 전기식 진단 기기 제조업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1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27112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1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2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27194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9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 제조업	27211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27214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7215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 제조업	27219
	사진장비 및 광학 기기 제조업	사진장비 및 광학기기 제조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2730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27302
			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7309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27400
전기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1
			변압기 제조업	28112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3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28114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123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일차전지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28202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28301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28303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구 및 램프 제조업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28423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28429
			주방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1
	가정용 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28512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0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28902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 항공기용 및 차량용 제외	내연기관 제조업	29111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29119	
		유압 기기 제조업	유압 기기 제조업	29120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 포함	액체 펌프 제조업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32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제조업	29133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 장치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0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1	
			승강기 제조업	29162	
			컨베이어 장치 제조업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9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171	
			공기 조화장치 제조업	2917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29173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4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제조업	29176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0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일반 저울 제조업	29191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29192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9193	
			동력식 수지 공구 제조업	29194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9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

		업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9230
		건설 및 광업용 기계장비 제조업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 제조업	29241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29242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29261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9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9272
		산업용 로봇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29280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9291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9292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9294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10
		자동차 제조업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1
			화물 자동차 및 특수 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1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제조업	30203

자동차 신 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 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1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 조업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용 신 품 동력 전달장 치 및 전기장 치 제조업	자동차용 신 품 동력 전달장 치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 품 전기장치 제 조업	30332	
	자동차용 기 타 신품 부 품 제조업	자동차용 신 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제 조업	30391	
		자동차용 신 품 제동장치 제 조업	30392	
		자동차용 신 품 의자 제조업	30393	
		그 외 자동차 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99	
	자동차 재제 조 부품 제조 업	자동차 재제 조 부품 제조 업	자동차 재제 조 부품 제조 업	30400
	기타 운 송장 비 제 조업	선박 및 보 트 건 조업	강선 건 조업	31111
합성수지 선 건조 업			31112	
기타 선 박 건 조업			31113	
선박 구 성 부 품 제 조업			31114	
오락 및 스포 츠용 보 트 건 조업		오락 및 스포 츠용 보 트 건 조업	31120	
철도장 비 제 조 업		철도장 비 제 조 업	기관차 및 기 타 철 도 차 량 제 조 업	31201
			철도 차 량 부 품 및 관 련 장 치 물 제 조 업	31202
항공기, 우주선 및 부 품 제 조 업		항공기, 우주 선 및 보 조 장 치 제 조 업	유인 항공 기, 항공 우주 선 및 보 조 장 치 제 조 업	31311
			무인 항공 기 및 무 인 비 행 장 치 제 조 업	31312
		항공기 용 엔 진 및 부 품 제 조 업	항공기 용 엔 진 제 조 업	31321
			항공기 용 부 품 제 조 업	31322
그 외 기 타 운 송 장 비 제 조 업		전투 용 차 량 제 조 업	전투 용 차 량 제 조 업	31910
		모터 사 이 클 제 조 업	모터 사 이 클 제 조 업	31920
		그 외 기 타 분 류 안 된 운 송 장 비 제 조 업	자전 거 및 환 자 용 차 량 제 조 업	31991
			그 외 기 타 달 리 분 류 되 지 않 은	31999

		비 제조업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침대 및 내장 가구 제조업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2011	
			소파 및 기타 내장 가구 제조업	32019	
		목재 가구 제 조업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 가구 제조업	32021	
			기타 목재 가구 제조업	32029	
		기타 가구 제 조업	금속 가구 제조업	32091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99	
기타 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 용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 련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 용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0	
	악기 제조업	악기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33201	
			전자 악기 제조업	33202	
			기타 악기 제조업	33209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운동 및 경기 용구 제조업	체조, 육상 및 체력 단련용 장비 제조업	33301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3302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3303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9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 조업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33401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2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33409	
	그 외 기타 제 품 제조업	그 외 기타 제 품 제조업	간판 및 광고 물 제조업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0
			사무 및 회화 용품 제조업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0
			가발, 장식용 품 및 전시용 모형 제조업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3931
				전시용 모형 제조업	33932
				표구 처리업	33933
			그 외 기타 분 류 안된 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33991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 업	33992
비 및 솔 제조업				33993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 품 제조업	3399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 리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일반 기계류 수리업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 업	34011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4019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 리업	전기·전자 및 정밀 기기 수리업	34020	